

예 산 총 칙

2012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37,896,240	13,136,887
일반회계	422,877,173	12,686,315
특별회계	15,019,067	450,572
기타특별회계	15,019,067	450,57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594,655	317,840
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	75,538	2,266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581,165	17,435
의료보호비특별회계	1,328,311	39,849
복지기금특별회계	152,910	4,587
간척지구농지기금특별회계	110,000	3,30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2,168,321	65,050
완도군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8,167	24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794,958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4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호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계획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